

Deloitte.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Newsletter

「AI 거버넌스: 이사회가 당면한 핵심과제」 및 11월 동향

2024.11 카드뉴스

리더 메시지

『11월 Newsletter』는 딜로이트 글로벌 보고서
『AI 거버넌스: 이사회가 당면한 핵심과제』를 소개하며,
『횡령 등 자금부정 방지 위한 통제활동 공시 세부 작성지침
마련』,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참여 현황 및 향후 계획』,
『주요 회계 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의 규제 동향을 담았습니다.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활동에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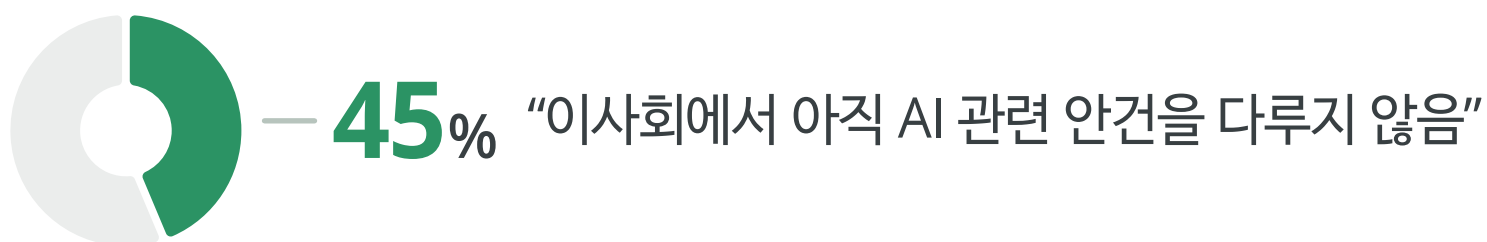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김한석 센터장

AI 거버넌스: 이사회가 당면한 핵심과제

지금까지 AI에 대한 이사회 참여는 제한적이며, 특히 생성형 AI의 기회·위험을 감독하기엔 미흡, 이제는 이사회 AI 감독을 강화할 시점

이사회 & 최고경영진 대상 Deloitte Global Surv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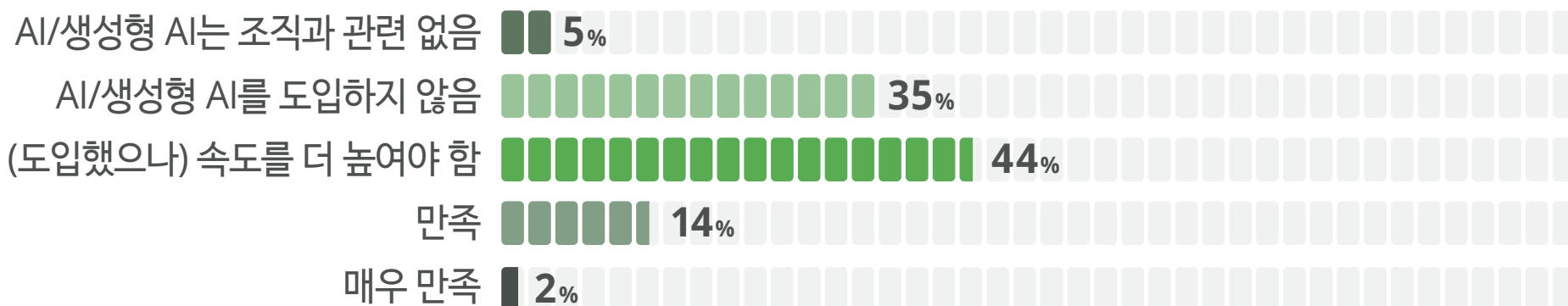
Q 귀사의 이사회가 AI 관련 안건을 논의하는 빈도는?



Insights 지금까지 AI에 대한 이사회 참여는 제한적인 상황이었음



Q 귀사의 AI 도입 속도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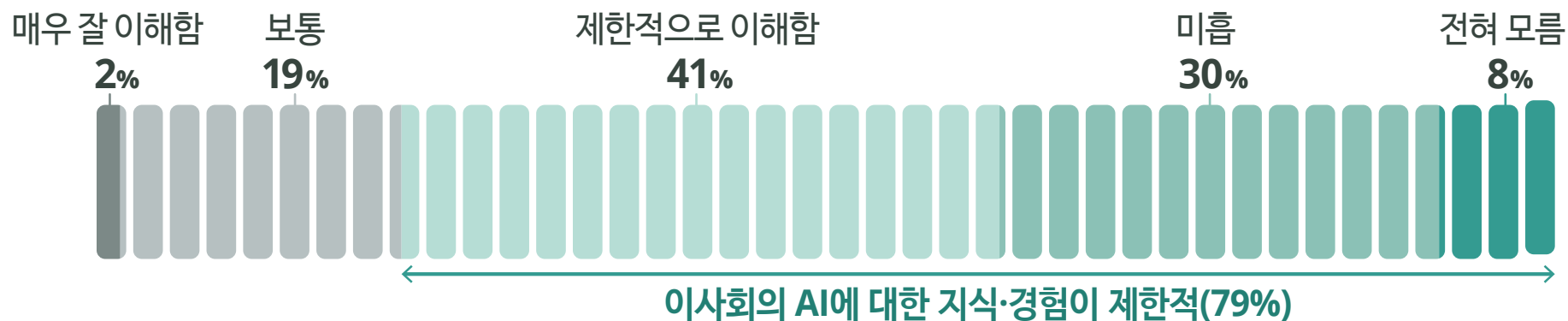


Insights 이사회가 AI 감독을 고민하고, 정의하고,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시사



AI 거버넌스: 이사회가 당면한 핵심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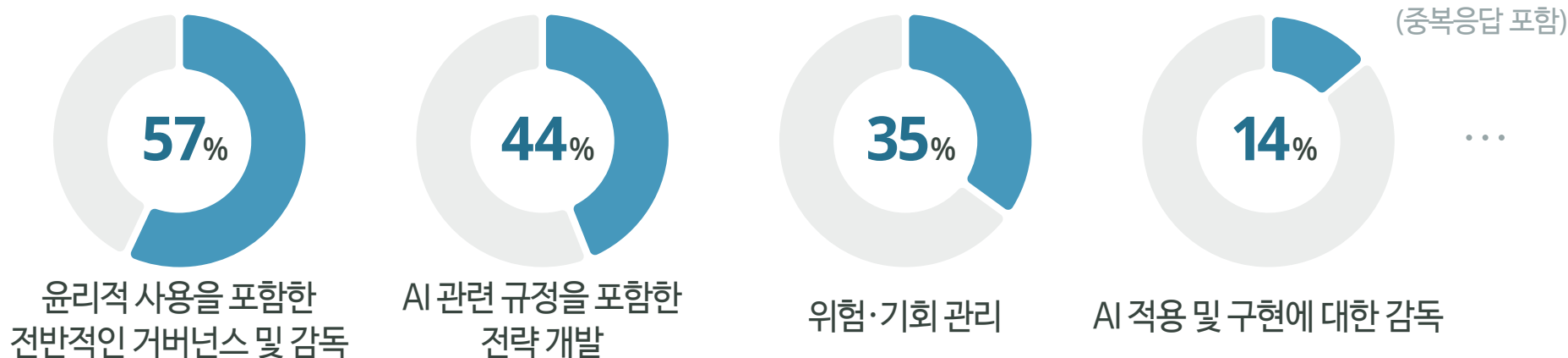
Q 귀사의 이사회는 AI에 대해 얼마나 이해(지식·경험)하고 있는가?



Insights 이사회 AI 이해도를 높이는 유용한 방법은 AI를 직접 경험·체험하는 방식임. 이를 통해 이사회는 AI의 실제적인 적용 가능성을 체감하고 산업별 AI 활용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음



Q 이사회의 책임 영역은?



Insights 이사회 AI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AI 안전 규정·논의', '거버넌스 구조 정의', 'AI 리터러시* 평가 및 향상'이 있음

*AI의 개념, 기능 및 AI가 실생활·업무환경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지식



횡령 등 자금부정 방지 위한 '통제활동' 공시 세부 작성지침 마련

'25년부터 의무 적용하되, 소규모 상장사 등은 1년간 유예

주요 내용

- '25사업연도부터 상장사와 대형 비상장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횡령 등 자금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 기재 필요

자금부정 통제 공시 예시

(운영실태보고서 첨부)

구분	회사가 수행한 통제활동
자금 통제	<법인인감, OTP 사용통제> 감사팀에 의해 법인인감, OTP의 물리적 접근이 통제되고 있으며, 감사팀장이 사용대장에 사용 목적을 검토·승인해야 날인·사용이 허용됨
	설계·운영 실태 점검 결과 테스트 수행 결과, XX의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었으며 XXX의 시정조치를 이행할 예정임 (내부회계팀, 'X1.7월, 'X2.1월)

✓ 기재 대상

- 전사적 수준 통제와 자금통제 중 자금 관련 부정위험을 예방·적발하는데 직접 관련된 통제로 한정 (의무)
- 그 밖의 업무 수준 통제도 자금부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됐다고 판단한 경우 기재 가능 (선택)

✓ 기술 정도

- 통제 기술서 상 통제활동 내용의 요약 기술이 원칙이나, 그대로 기술도 허용

✓ 점검 결과

- 수행 부서·시기의 구체적 명시, 중요한 취약점 발견 시 시정계획 또는 이행결과 기술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참여 현황 및 향후 계획

참여 현황

- 🔍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 관련 '24.7월 발표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계획'에 따라 **총 18개**(금융지주 9사, 은행 9사) **금융사가 책무구조도 제출 및 시범운영 참여**
- 🔍 참여사는 내부통제 관리체계의 실제 운영을 통해 자체 내부통제 역량 강화가 기대됨
- 🔍 시범운영 기간(접수일~'25.1.2.) 중에는 **조기도입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 예정

1

사전 컨설팅
실시

2

책무구조도 관련 지배구조법
위반행위 비조치

3

위법행위 자체 적발·시정 시
제재 감경·면제

향후 계획

📋 금융감독원은 참여사의 책무구조도를 기초로 법령상 정정·보완 사유, 책무 배분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 및 자문 등의 컨설팅을 수행하고, 연내 각 금융사에 피드백 제공 예정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업·보험업 등('25.7월 책무구조도 제출 대상)의 준비상황을 살펴보면서 여타 금융업권으로 시범운영 확대도 검토 예정

주요 회계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주기적 지정 유예

- 🔧 기업의 지배구조 자체개선 유도를 통해 근본적인 회계투명성 제고가 정책의 목표 ☒
- 🔍 주기적 지정제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지정 '면제'보다 '유예'(3년)로 검토 ☒
- 📖 밸류업 우수기업 중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취약하거나 회계부정 우려가 큰 경우에는 가점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계획 ☒

IFRS 18

- 🏢 영업손익 분류방식 변경에 따른 기업·투자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T/F를 통해 선제적으로 점검해왔고, 국내 현실에 맞게 수정 도입할 부분, 제도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반영 ☒
- 💬 밀착지원을 위해 4대 회계법인도 T/F에 참여해 피감회사에 대한 영향점검과 교육·안내 강화 예정 ☒
- 📅 연내 공개초안 발표 후, 의견수렴 거쳐 '25년 중 기준 제정 계획 ('27년 시행 예정) ☒

감사부담 경감

- 📄 외부감사 효율화를 위한 기업의 자체노력을 표준감사시간 산정 시 고려,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부분적용, 적용유예 연장 등 ☒

2024년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웨비나 성료

웨비나 개요

대 상 | 국내 상장법인 사외이사·감사위원·감사·C레벨·
실무진

일 시 | 2024년 11월 5일 (화) 14:00 ~ 16:10

장 소 | 온라인 생중계 웨비나



다시보기



현장 스케치 영상

Agenda I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가 알아야 할 효과적인 국내외 공시 감독 및 현황

Session I. 경영지표와 ESG 공시: 자본시장과의 Communication

- 일부 기업의 내부자 거래 혹은 허위 공시 등으로 기업가치가 저평가 된 사례 소개
- 충실한 경영지표·ESG 공시가 시장에서 기업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하는 데 기여하는 역할 강조
- 기업이 준비해야 할 경영지표와 ESG 공시에 대한 시사점 제시





Session II. 회사의 부정과 이사회 역할

- 감사위원회가 디지털 포렌식을 활용해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한 감리 사례 제시
-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가 회사와 협력하여 위협을 제거함으로써 자본시장 신뢰 구축에 기여하는 역할의 중요성 강조



Session III.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개선방안 및 글로벌 이사회 공시 감독 현황

- 글로벌 ESG 공시 규제 동향에 따른 지배기구 공시 감독의 인식 변화와 이사회·감사위원회의 공시 감독 역할의 차이를 설명하며 실효성 있는 공시 감독 포인트 소개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개선방안 제시하며 거버넌스 개선은 필수임을 강조



Session IV.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공시와 이사회 역할

-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수립, 이행점검 및 소통의 전 과정을 이끄는 지배기구의 역할 수행 강조
- 일본의 기업가치 제고 사례 소개, 국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방향 및 지배기구 역할 논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Contact

딜로이트 안진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기업의 회계투명성 확보와 거버넌스 개선을 지원합니다.

파트너



김한석 파트너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리더 |
Audit & Assurance
✉ hansukim@deloitte.com



정 현 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 hyunjeong@deloitte.com



김학범 파트너

Partner | Risk Advisory
✉ hbkim@deloitte.com



오정훈 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 junoh@deloitte.com

자문교수단



장정애 교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준화 교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충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문의 krccg@deloitte.com



앱스토어, 구글플레이/카카오톡에서 '딜로이트 인사이트'를 검색해보세요.
더욱 다양한 소식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Deloitte.

딜로이트 안진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krccg@deloitte.com

김한석 Partner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센터장
hansukim@deloitte.com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Bengaluru,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Mumbai, New Delhi,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